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방송설비가 훼손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시청 설비 관련 유권해석 안내



DTV
digital television **KOREA**
www.dtvkorea.org

KBS  MBC  SBS  EBS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시청 설비 관련 유권해석 안내

2013년 1월 1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실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자가 고품질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청 설비를 개보수해야 합니다. 일부 유료방송사에서는 관련 법령을 왜곡하여 방송 수신용 내부 선로를 유료방송용으로만 사용하거나, 공시청 시설을 유지보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파트 관리주체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시청 설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방송설비가 훼손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동주택에는

- ①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공동 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 설비를 구축해야 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42조)
- ②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 ③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주체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DTV KOREA는 시청자들의 지상파 수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직접 수신을 원하시는 입주민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DTV KOREA 신중섭 팀장(02-3219-6356)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주요 내용 요약

분리배선 아파트의 방송수신용 내부선로 관리원칙

- 2004년 분리배선이 의무화된 이후 공동주택은 내부선로를
 - ① 하나는 방송공동 수신 안테나용(공시청용)
 - ② 다른 하나는 종합유선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함.
- 만일 두 개의 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관리주체는 관련법에 의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공시청 설비 유지보수

- 현재 유료방송에 단체가입 여부, 유료방송사에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해야만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리주체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 2004년 이전 아파트는 내부의 방송수신용 선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상파 수신용 안테나와 그 부속 설비는 언제나 내부의 방송수신용 선로에 연결하면 방송시청이 가능하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해야만 함(마찬가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상 수선주기(5년, 15년 등)는 시설물의 물리적인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시설물이 설치된 시점부터 기산

공시청 선로 훼손 및 소유권

-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설비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 이를 임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
- 단체가입 등으로 유료방송에서 사용하던 선로를 단체가입해지 등의 사유로 공시청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료방송사는 내부 선로를 입주민에게 반납

1

분리배선 아파트의 방송수신용 내부선로 관리원칙

2004년부터는 <방송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가 층별 장치함까지 분리배선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2003.9.3.)

제19조(설치범위) ②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2개의 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1개는 유료 가입자용, 다른 1개는 무료 (또는 월 500원) 20개 채널 제공용 등).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KBS 질의(2012.8.21.)

분리배선이 의무화된 2004년 이후 공동주택이 유료방송사와 단체가입 등을 통해 방송공동 수신설비 두개 선로(공동수신 안테나 선로,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를 모두 유선 방송에 사용하여 입주민의 매체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 여부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답변(2012.8.30.)

○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의 원칙) 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同 고시의 제2조(정의) 제1항의 제2호 및 3호는 “방송공동수신안테나설비”와 “종합유선 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 라디오 방송을 공동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 · 선로 · 증폭기 및 분배기와 그 부속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 관로 · 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 이에, 방송공동수신설비 두 개 선로 모두를 종합유선방송 수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시에서 정의한 바와 달리 이용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 공시청설비가 고시와 달리 이용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처벌 등은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을 소관하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을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 **KBS 질의(2012.8.14.)**

공동주택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개보수 할 때 하나의 배선은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로 개보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러한 원칙을 어기고(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등으로) 두 개의 선로를 모두 유선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제재 조치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답변(2012.8.21.)**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시에 따른 용도가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라면, 두 개의 선로 모두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을 이 법(주택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주택법 제42조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참조, 장기수선 계획 관련 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주택법 제59조제1항), 상기주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용 배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바와 같이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공시청 설비 유지보수

공동주택에는 1979.8.22일부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제31조(텔레비전 공청시설)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텔레비전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9.8.22.]

또한 2009.5.6.일부터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에 방송공동수신설비에 관한 수선주기 등이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지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부 유료방송사에서는 케이블에 단체가입했거나 케이블에서 무료로 20개 채널을 제공할 경우, 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다음처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의 #1

분리배선 이전, 유선방송회사에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개보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옥상의 지상파 안테나 등은 누가 유지보수해야 하는지?

■ 국토해양부 답변(2012.7.10.)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 보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7조제2항)

다만, 유선방송회사에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유지·보수를 잘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시기 등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파 안테나 등도 상기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 등 필요)

■ 자주 묻는 질의 #2

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 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국토해양부 답변(2012.7.10.)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 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또한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하여야 합니다.

■ KBS 질의(2012.8.14.)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는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해 5년내 20% 개보수, 15년내 100% 전면교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5년, 15년)의 기산 시점이 법령 개정 시점인 2009년을 의미하는지, 혹은 개별 공동주택 건축 시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답변(2012.8.21.)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상 수선주기(5년, 15년 등)는 시설물의 물리적인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시설물이 설치된 시점부터 기산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유료방송에 단체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공동안테나 수신설비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해야만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공동주택 내부선로를 단체가입을 통해 유료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안테나를 포함한 수신설비(헤드엔드시스템 등)는 언제든지 내부선로에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참조

주택법제101조(과태료)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7.1.11.)

3

공시청 설비 훼손 및 소유권

■ KBS질의(2012.8.14.)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건축법상 건축설비, 주택법상 부대시설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외부인이 지상파 방송용 공동 수신설비를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답변(2012.8.21.)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설비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 이를 임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설비가 입주민의 공동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청선로의 임의 훼손은 민·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내부선로가 1개뿐인 공동주택에서 유료방송사와의 단체계약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의 내부 배선을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단체계약이 만료되어 **내부선로를 방송 공동 안테나 수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유료방송사는 내부 배선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신규로 유료방송용 선로를 포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는 입주민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공동수신설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DTV KOREA(02-3219-6356)** 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수신 한국방송공사 귀하 (우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경유)

제목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기획국-1970('12.08.14)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유권해석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불임과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임 : 질의 · 답변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주무관 민기숙 행정 사무 전결 2012. 8. 21.
관 류종우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4528 (2012. 8. 21.) 접수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8252 팩스번호 02-503-7313 / mkszzang@mltm.go.kr / 비공개(6)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 질의·답변

1. 분리배선이 의무화된 2004년 이후 공동주택이 유선방송사와 단체계약을 통해 방송 공동수신설비 두 개 선로(공동수신 안테나선로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를 모두 유선방송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선로는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신호 송출에 사용하고, 하나의 선로는 아날로그 단체가입 신호 송출에 사용) 이러한 공동주택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개보수할 때, 두 개 배선을 계속 유선방송에 사용해도 되는지, 혹은 원래의 용도에 맞도록 하나의 배선은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로 개보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보수 되는 등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42조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아. 통신 및 방송설비).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시에 따른 용도가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라면, 두 개의 선로 모두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만일 위 1번 질의에서 공동주택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개보수 할 때 하나의 배선은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로 개보수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러한 원칙을 어기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등으로) 두 개의 선로를 모두 유선 방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제재 조치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을 이 법(주택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주택법 제42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참조,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주택법 제59조제1항), 상기주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

3.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는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해 5년내 20% 개보수, 15년내 100% 전면교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5년, 15년)의 기산 시점이 법령 개정 시점인 2009년을 의미하는지, 혹은 개별 공동주택 건축 시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1997년 완공된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장기수선 계획에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개보수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상 수선주기(5년, 15년 등)는 시설물의 물리적인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시설물이 설치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4. 국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등)에 KBS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제47조(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가 이러한 관리 의무를 어겼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위반되게 방송공동수신설비를 관리할 경우의 벌칙에 대하여는 질의2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해, 재난 등의 긴급상황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면, 긴급상황시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 적정하게 잘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건축법상 건축설비, 주택법상 부대시설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외부인이 지상파 방송용 공동수신설비를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설비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 이를 임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신 한국방송공사(기획국)

(경유)

제목 방송 공동수신설비 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

1. 기획국-2022(2012.08.21,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 유권해석 의뢰)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요청하신 유권해석 의뢰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임 :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유기석

행정사무관 김만봉

전파방송전결 2012. 8. 30.
관리과장 송경희

협조자

시행 전파방송관리과-1085 (2012. 8. 30.) 접수

우 110-777 서울중로구세종로 2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전파 / www.kcc.go.kr
방송관리과

전화번호 02-750-2265 팩스번호 02-750-2269 / rh1017@kcc.go.kr / 대국민 공개

KBS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서

□ 유권해석 의뢰 내용

분리배선이 의무화된 2004년 이후 공동주택이 유선방송사와 단체가입 등을 통해 방송 공동수신설비 두 개 선로(공동수신 안테나선로,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를 모두 유선방송에 사용하여 입주민의 매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 여부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의 원칙)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同 고시의 제2조(정의)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 안테나·선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 이에, 방송 공동수신설비 두 개 선로 모두를 종합유선방송 수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시에서 정의한 바와 달리 이용되는 것이라 판단되며,
- 공시청 설비가 고시와 달리 이용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처벌 등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포함)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을 소관하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토 해 양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방송수신 공동설비 관련 주요 질의.답변 홍보 협조 요청

1. 귀 시·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주 질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불임과 같이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 널리 홍보하여 공동주택 내 방송수신 공동설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동 내용 참조)

불임 주요 질의 답변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전파방송관리과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디지털방송정책과장)

주무관	행정 사무관	과장	전결 2012. 7. 10.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3627 (2012. 7. 10.)	접수	디지털방송정책과-722 (2012. 7. 11.)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 http://www.mltm.go.kr	
전화번호	02-2110-8252	팩스번호	02-503-7313 / mkszzang@mltm.go.kr / 비공개(6)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방송수신 공동설비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질의) '09년도 이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는지?

→ (답변) '09년도('09.5.6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방송수신 공동설비” 추가) 이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 '91.3.16부터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었으며, 설치된 설비는 적절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 '09.5.6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그 설비에 관한 수선주기 등이 규정되었으며, '09년 이전 방송수신 공동설비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 참고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주기 등은 예시 규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시설양호 → 주기 연장, 시설 조기 노후화 → 주기 단축 등 가능)

(질의) 분리배선 이전, 유선방송회사에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개보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옥상의 지상파 안테나 등은 누가 유지보수해야 하는지?

* '03년까지는 “방송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설비”의 공동 이용이 허용되었으나(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수준('00.6월, 정통부 고시), '04년 부터는 종별 장치함까지 **분리배선을 의무화**함(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03.9월, 정통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답변)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 보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7조 제2항), 다만, 유선방송회사에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유지·보수를 잘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시기 등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지상파 안테나 등도 상기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 등 필요)

* 참고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수선 총당금을 사용(주택법 제51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관리주체가 계약자가 되며, 최저 낙찰제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질의) 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답변)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또한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 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함(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